서울특별시 금천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

[도병두 의원 대표발의]

의안번호 2298

발의일자 : 2023. 2. 6.

발 의 자 : 도병두 의원(대표발의)

이인식 의원

1. 제안이유

최근 많은 건설·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의 발생이 급증하여 지역사회와 구민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바, 실효적인 중대재해 예방정책 수립과 안전 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종합적·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과 지역사회, 종사자의 안전한 환경 조성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다.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·시행(안 제4조)
- 라.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(안 제5조 및 제6조)
- 마. 중점관리대상 지정 · 운영(안 제7조)
- 바.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교육 및 홍보(안 제8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

- 1)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 및 제4조
- 2) 「지방자치법」제13조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예산조치

다. 기 타

1) 입법예고 : 2023. 2. 7. ~ 2023. 2. 13.

서울특별시 금천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민(이하 "구민"이라 한다) 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"법"이라 한다) 제2조를 따른다.
- 제3조(구청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"구청장" 이라 한다)는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추진하고, 이에 필요한 행정적·재 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- 제4조(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·시행) ①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해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.
 - 1.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
 - 2.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·예산·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
 - 3.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
 - 4. 안전·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

- 5.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5조(실태조사) ①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 - ② 실태조사를 객관적·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·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.
- 제6조(협력체계 구축 등)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해 민관협력 기구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 -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정부, 다른 지방자치단체, 국내·외 기업,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- 제7조(중점관리대상) 구청장은 금천구가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.
 - 1.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
 - 2.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
 - 3.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조제3호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워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
 - 4.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

또는 수단

제8조(교육 및 홍보)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민과 종 사자,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교육·홍보를 할 수 있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□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

[시행 2022. 1. 27.] [법률 제17907호, 2021. 1. 26., 제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9. "경영책임자등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- 가.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
- 나.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의 장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

제4조(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)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·운영·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·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- 1.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
- 2.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
- 3. 중앙행정기관·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,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
- 4. 안전·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
- ② 제1항제1호 · 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「지방자치법」

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8661호, 2021. 12. 28., 타법개정]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4.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 · 관리
- 가. 지역개발사업
- 나. 지방 토목·건설사업의 시행
- 다. 도시·군계획사업의 시행
- 라. 지방도(地方道), 시도(市道) · 군도(郡道) · 구도(區道)의 신설 · 개선 · 보수 및 유지
- 마.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
- 바.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
- 사. 자연보호활동
- 아.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
- 자. 상수도 ·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
- 차.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
- 카. 도립공원, 광역시립공원, 군립공원,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
- 타.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, 녹지,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
- 파. 관광지,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
- 하.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
- 거. 주차장 · 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
- 너.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
- 더.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